



연구통합관리시스템 (rERP)

연구자용 매뉴얼



연구수당 청구

연구수당 청구방법,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



목차

연구통합관리시스템(rERP)
연구수당 신청



연구수당 신청 > 시작하기

1p



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

6p



제목 선택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



▶ 연구수당 신청 > 시작하기

1

i 목적 및 메뉴

목적 :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등록

메뉴 경로 :

과제관리



과제정보



청구서



입력 절차

1 일반청구 버튼 클릭



주의사항

✓ 꼭 확인

- 연구기간 50% 경과 후
→ 연구수당 계상액의 50% 지급 가능
- 연구기간 90% 초과 후
→ 연구수당 계상액의 100% 지급 가능
- 최초 협약 시 계상된 연구수당 초과 지급 불가



화면 예시

과제정보

관련서식

과제책임자/과제명

Q 조회

과제책임자

교수)

과제명

과제성격

R&D / 국가연구개발사업 / 비수
익 / 면세

과제기간

2026-03-01 ~ 2027-02-28

연계구분

(신)통합미지바로

기본정보

예산

참여인력

청구서

지출현황

카드

자금현황

단계정보

부가증빙

매입/매출증빙

성과내역



결의서

1

◦ 일반청구

◦ 카드청구

◦ 대량청구

◦ 반납요구

◦ 자금대체

◦ 일반대체

◦ 징수결의

◦ 현물결의

◦ 예산잔액조정신청

신청일자

2026-03-01



~ 2026-05-13



진행구분

전체



결의서구분

☒ 전체

☒ 일반

☒ 카드

☒ 대량

☒ 인건비일괄

☒ 반납

☒ 자금대체

☒ 일반대체

☒ 징수

☒ 일괄청구

Q 조회

내용

(대표적요)

문서번호



연구수당 신청

2



입력 절차

- 1 [인건비(소득성 경비)] 탭 선택
- 2 [예산] 연구수당 -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선택
- 3 [청구종류] 연구수당(혁신법) 선택
- 4 [연구수당불러오기] 클릭
- 5 [평가내역작성] 버튼 클릭



주의사항

꼭 확인

- 개인 지급 연구수당은 반드시 「인건비(소득성 경비)」로 청구
- 「일반청구」 탭 신청 불가



화면 예시

청구

일반청구

인건비(소득성 경비)

2

*예산

연구수당(R&D)

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

예산잔액 :

예산

3

*청구종류

☒ (134) 연구수당(혁신법)
 ☐ (11) 기관부담금(내부입금)
 ☐ (12) 퇴직충당금(내부입금)

4

(*)증빙

[연구수당불러오기]

*출금계좌

[지출계좌] 10003386995

*소득자[직접입력 :]

*국적

KR

한국

*계좌정보

해당없음

*청구액

*적요

*통합이지바로 부가정보

집행요청구분

내자

첨부문서

소득정보 ▲ - 기타소득(76 기타소득 기본코드(연구수당))

연구수당(혁신법)

평가서

차수	평가일자	지급예정액	청구총액	반납총액	잔액
현재 0 건 / 총 0 건					

5

평가내역작성

수정

삭제

지급내역

No	연구원번호	연구원명	수당	근로소득자	수정	개인지급액	기관부담금총액
현재 0 건 / 총 0 건							

생성

06-17

첨부

삭제

순서변경

초기화

저장



연구수당 신청



입력 절차

1 평가일자 및 지급예정액(총지급액) 입력

2 연구수당 지급 대상자의 평가기간, 평가점수 및 평가내용 입력

3 성과급지급내역 확인 후 [저장] 버튼 클릭

1 기본평가정보 입력

2 기본평가정보를 적용할 연구자만 체크

3 기본평가정보적용 버튼 클릭
→ 2 평가내역에 반영



주의사항

꼭 확인

- 전체 참여연구원 기여도 합계 100% 유지
- 평가항목 1개 이상 선택 후 기여도 평가
- 일부기간 참여자 및 중도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 평가 필수
- 연구수당 미지급자는 기여도 0점으로 입력



화면 예시

연구수당(혁신법) 평가처리

▶ 평가차수

차수	평가일자	지급예정액(A)	청구총액	잔액	비고
	2026-06-17	13,806,000	0	13,806,000	

▶ 기본평가정보

평가기간	연구과제 수행	연구결과물	연구발표	기타	기여도합계(B) (100)	지급액 (C=A*B/100)	평가내용
	0.00	0.00	0.00	0.00	0.00	0	연구과제 수행 보조

▶ 평가내역

☐	NO	성명	주민번호	평가기간	연구과제수행	연구결과물	연구발표	기타	기여도합계(B) (100)	지급액 (C=A*B/100)	평가내용
☐	1		*****	2026-03-01 ~ 2026-08-31	25.00	15.00	10.00	0.00	50.00	6,903,000	연구과제총괄, 연구지
☐	2		*****	2026-03-01 ~ 2026-08-31	20.00	10.00	0.00	0.00	30.00	4,141,800	연구과제총괄, 논문출
☐	3		*****	2026-03-01 ~ 2026-08-31	10.00	0.00	0.00	0.00	10.00	1,380,600	연구과제 수행 보조
☒	4		*****	2026-03-01 ~ 2026-08-31	5.00	0.00	0.00	0.00	5.00	690,300	연구과제 수행 보조
☒	5		*****	2026-03-01 ~ 2026-08-31	5.00	0.00	0.00	0.00	5.00	690,300	연구과제 수행 보조
☐	6		*****								
합계					65.00	25.00	10.00	0.00	100.00	13,806,000	

▶ 성과급지급내역

☐	NO	성명	근로소득	지급예정액	계좌정보	결의정보(개인)	결의정
☐	1	N	6,903,000	신한은행	[예금주조회] 성공		
☐	2	N	4,141,800	신한은행	[예금주조회] 성공		
☐	3	Y	1,380,600	국민은행	[예금주조회] 성공		
☐	4	N	690,300	신한은행	[예금주조회] 성공		
☐	5	N	690,300	국민은행	[예금주조회] 성공		

평가내역서 출력

3

저장



연구수당 신청



입력 절차

- 1 평가서 선택
- 2 생성 버튼 클릭
-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선택
- 4 일괄생성 버튼 클릭

※ 근로소득자를 기타소득으로 입력한 경우

- 1 [수정] 버튼 클릭
- 2 근로소득자 [예]로 체크
- 3 자동계산 버튼 클릭
- 4 저장 버튼 클릭



주의사항

꼭 확인

-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자는 「근로소득자(Y)」 여부 확인
- 근로소득자(Y)는 기타소득으로 수정 불가
- 근로소득자는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후 지급



화면 예시

연구수당(혁신법)

평가서

1	차수	평가일자	지급예정액	청구총액	반납총액	잔액
☒	1	2026-06-17	13,806,000	0	0	13,806,000

현재 1 건 / 총 1 건

지급내역

No	연구원번호	연구원명	수당	근로소득자	수정	개인지급액
☐	1		6,903,000	N	[수정]	6,903,000
☐	2		4,141,800	N	[수정]	4,141,800
☐	3		1,380,600	Y	[수정]	1,299,080
☐	4		690,300	N	[수정]	690,300
☐	5		690,300	N	[수정]	690,300

연구수당 청구내역 일괄생성

재원*	국고
지출예산*	연구수당(R&D)
지출계좌*	[지출계좌] 100033869953 통합이지바로

※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구분이 근로소득자로 그 외에는 기타소득(강연료 등)으로 처리됩니다.

연구수당 지급액 변경 관리

참여인력정보

연구원번호	
성명	
근로소득자*	☒ 예 ☐ 아니오
퇴직충당금 적립여부*	☐ 예 ☒ 아니오

지급내역

수당(A+B+C)	1,380,600
과세표준	1,299,080
개인지급액(A)	1,299,080
퇴직충당금(B)	0
기관-국민연금(비대상)	0
기관-건강보험(대상)	46,700
기관-노인요양(대상)	6,130
기관-고용보험(대상)	20,130
기관-산재보험(대상)	8,560
기관부담금합계(C)	81,520

※ 국민연금은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정산하지 않아 비대상으로 처리됩니다.

2

생성

4

일괄생성

3

자동계산

4

저장



연구수당 신청



입력 절차

1 신청 버튼 클릭



확인 목록

- ✓ 인건비(소득성 경비) 청구 확인
- ✓ 전체 참여연구원 기여도 합계 100% 확인
- ✓ 근로소득자(Y) 여부 확인



화면 예시

▶ 청구내역

○	NO	청구종류	영수증 /소득구분	비목	세목	지출계좌	입금처	예금주	입금계좌	지출방법	청구액	공급가액 실지급액	부가세 /공제합계	증빙일자	부가증빙	첨부 문서	적요	.
○	1	연구수당(혁신법)	기타소득	연구수당 (R&D)	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의 보상금? 장려금	신한은행 100033869953				계좌이체	690,300	629,560	60,740	2026-06-17				[삭제]
○	2	연구수당(혁신법)	기타소득	연구수당 (R&D)	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의 보상금? 장려금	신한은행 100033869953				계좌이체	690,300	629,560	60,740	2026-06-17				[삭제]
○	3	연구수당(혁신법)	기관부담금	연구수당 (R&D)	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의 보상금? 장려금	신한은행 100033869953				계좌이체	81,520	81,520	0	2026-06-17				[삭제]
○	4	연구수당(혁신법)	근로소득	연구수당 (R&D)	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의 보상금? 장려금	신한은행 100033869953				계좌이체	1,299,080	1,229,470	69,610	2026-06-17				[삭제]
○	5	연구수당(혁신법)	기타소득	연구수당 (R&D)	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의 보상금? 장려금	신한은행 100033869953				계좌이체	4,141,800	3,777,330	364,470	2026-06-17				[삭제]
○	6	연구수당(혁신법)	기타소득	연구수당 (R&D)	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의 보상금? 장려금	신한은행 100033869953				계좌이체	6,903,000	6,295,540	607,460	2026-06-17				[삭제]
합계											13,806,000	12,642,980	1,163,020					

청구서출력

새 청구서

일괄예금주조회

1
신청

목록

✖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

🎯 사용용도

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
연구책임자 및 연구자
(학생연구자 포함)을 대상으로
지급하는 장려금

📋 사용기준

🕒 계상 한도

수정인건비(내·외부 지급 및
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)의
20% 범위내에서 계상 및 지급

👥 기여도 평가

참여연구자 전부(일부기간 참여자,
중도퇴직자 포함)를 대상으로
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
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

🤝 1인 지급 한도

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,
1인에게 **“연구수당 계상액”**의
70%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
* 협약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와
다르게 감액된 경우에는 **“변경된 계상액”**을 의미

🔒 증액 불가

협약체결(단계협약 시점) 시
계상한 금액보다
연구수당 증액 불가

📈 직접비 사용 비율

연구수당 지급비율이
“직접비 사용비율+20%”
를 초과한 경우 불인정

🚫 지급 불가 대상

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
연구수당 지급 불가

❓ 자주하는 질문 (FAQ)

Q1

미지급인건비계상률 0% 참여인력도
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?

A

인건비계상률 0%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
경우도 **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.**
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
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
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.

Q2

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이었으나, 연구개발기간 중
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
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

전체 연구개발기간(단계과제는 해당 단계 기준) 동안
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이었던 과제는, 중도 퇴직 등으로
이후 1인 과제가 되더라도 1인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
70%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2차년도부터 1인만 참여하더라도 연구수당은
최대 **70%까지만** 지급 가능하며, 나머지 금액은
전문기관에 반납하거나 타 비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※ 연구수당을 다른 비목으로 변경한 경우에도
변경된 연구수당 예산의 70%까지만 지급 가능

Q3

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
20%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불인정이라고 하는데,
그럼 직접비를 얼마나 사용하여야 하나요?

A

총 연구개발기간(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단계)
동안 **직접비 사용비율이 80% 이상** 되어야,
연구수당 계상금액의 **100%까지** 지급이 가능합니다.

❗ 참고사항

- 연구기간 50%경과 시 연구수당 예산의 50%까지 지급 가능
- 연구기간 90%경과 후 연구수당 예산의 100% 지급 가능
-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원 기여도 합계는 100%를 유지하여야 함
-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간접비,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제외